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13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제220361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1
4. 검토의견	2
가.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현장점검 및 사고조사 등에 대한 업무 주체 추가 및 업무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53조 등)	2

I.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제220361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안태준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9. 4.

다. 회 부 일 : 2024. 9. 5.

2. 제안이유

시·도지사과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과 건설공사 부실측정 권한 부여(안 제53조)

나. 시·도지사과 현장점검 권한 부여(안 제54조)

다.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점검 대행 권한 부여(안 제54조의2)

다. 시·도지사, 국토안전관리원에 사고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가 능 대상을 중대건설현장사고에서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안 제67조)

4. 검토의견

가.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현장점검 및 사고조사 등에 대한 업무
주체 추가 및 업무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53조 등)

현행	개정안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추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 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 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 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 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 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 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 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추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 ----- ----- ----- 조, 제54조 및 제67조에서 - ----- ----- ----- ----- ----- ----- -----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 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	③ 시·도지사, 발주청----- ----- ----- ----- -----

현행	개정안
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신설>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 (건설공사 등의 현장점검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 장은 건설사고----- -----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행	개정안
④ 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한 <u>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u>은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u>필요한 경우</u>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에 대한 통보방법 및 절차 등과 <u>제2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사고조사에 관한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u> ⑤ 제3항 및 제4항----- ----- <u>시·도지사,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국토안전관리원</u>----- -----. ⑥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건설사고의 원인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u> ----- -----. ⑦ ----- ----- <u>제3항에 따른 건설사고 및 제6항에 따른</u>----- -----.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현장점검 및 사고조사 등에 대한 업무 주체 추가

안 제53조제1항, 제54조제1항 및 제67조제3항은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부실 정도 측정,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건설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53조제1항 및 제67조제3항에서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부실 정도를 측정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주체와 건설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업무 수행 주체 중 현행법에서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을 의미하고 있는데¹⁾,

현행 「건축법」, 「주택법」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주요 법률에서는 그 인·허가권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²⁾하고 있어 현행법에서의 인·허가기관의 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볼 수 있음.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③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건설기술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 해당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①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현행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시정명령 등의 주체에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발주청으로만 규정하는 등 시장·군수·구청장보다 상위의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에게서는 동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인천 검단 LH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³⁾ 등과 같이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 외에 발주청과 기초자치단체인 인·허가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열악한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 부실공사 측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인력 및 장비를 갖추기에 한계가 있어 건설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부실 정도 측정, 현장점검 및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3) ○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2022. 1. 11.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어 근로자 7명 사상(사망 6명, 부상 1명)
* 39층(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
⇒ 주요원인: 사고조사위원회는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콘크리트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
-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2023. 4. 29. 인천 검단신도시 내 LH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상판(슬래브)이 붕괴되는 사고 발생(인명 피해 無)
⇒ 주요원인: 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

또한,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담당한 해당 기관의 장이 건설공사 현장의 현장점검 및 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다소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상위의 행정기관으로서 보다 넓은 광역의 지역을 관할하고 재정적으로도 기초자치단체보다 다소 여유가 있는 시·도지사에게 추가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부실 정도 측정, 현장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및 사고조사 업무 등에 대한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2)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사고조사 업무 대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54조의2 및 제67조제4항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현장 점검 업무와 건설공사 현장 사고 발생 시 그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이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173,677건의 건설공사 현장점검 대상 중 전체의 약 13%에 해당하는 22,526건에 대해서만 현장점검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인력(공무원) 부족과 담당자의 전문성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고,

특히 시행된 현장점검 중 약 71%에 해당하는 15,965건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이 안전점검 업무를 대행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성으로 인해 현행법상 현장점검 권한이 없음에도 건설공사 현장점검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하고 있음.

< 건설공사 현장점검 현황(2023년도 기준) >

구 분	현장점검 대상 건수*(100%)	현장점검 이행 건수(12.97%)			
		합 계	지방청 (1.72 %)	발주청** (2.05%)	국토안전관리원 (9.2%)
건수	173,677건	22,526건	2,999건	3,562건	15,965건

※ 자료: 국토교통부

* 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대장 자료(1억원 이상)

** 토지구획공사, 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공사

또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사고 조사의 경우에도 그 전문성으로 인해 실제 사고 조사의 대부분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고 조사에 관한 권한이 현행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토안전관리원 직원이 사고 현장으로의 출입 등이 원활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건설현장 현장점검 및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사고조사 업무의 전문성 및 현실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조사 대상을 중대건설사고⁴⁾에서 건설사고⁵⁾로 확대하고 있음.

이는 최근 발생한 건설공사 사고의 대부분이 다양한 인적·물적 피해 규모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망자가 3명 이상이거나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인적·물적 피해가 일정

4)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③ 법 제6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하나의 건설사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건설사고로 본다.<개정 2019. 6. 25.>

1.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顛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5)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2.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는 현행 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유형의 건설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건설사고의 면밀하고 원만한 사고 조사를 통한 부실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국민의 안전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국토교통부도 다양한 건설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를 통해 그 조사결과를 분석·활용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건설공사 부실측정 및 현장점검 등에 관한 주체를 시·도지사에게까지 확대하고, 현장점검 및 사고조사의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이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중복 측정 및 점검 등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대한건설협회는 사고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수천 개의 건설현장에서 작업자의 실수 등 단순한 사항이 원인인 건설사고 현장까지 사고조사를 하게 되면, 공사 중단 및 공사 지연 등과 같은 부작용 발생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